

의안번호	제 48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
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2년 9월 7일

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 7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제4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
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 출 건 수 : 4건
- 예 산 액 : 1,533,211,000원
- 사 용 결 정 액 : 969,070,000원
- 지 출 액 : 965,034,030원
- 다음연도이월액 : 0원
- 집 행 잔 액 : 4,035,970원

3. 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: 원)

순	소관기관	사용결정 승인일자	사용결정액①	지출액②	다음연도 이월액③	집행잔액 ④=①-②-③	비고(사용내역)
1	기 획 국 예 산 과	2021-02-05	600,000,000	600,000,000	0	0	소로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공탁금 지원
2	충 청 북 도 유아교육진흥원	2021-09-29	27,060,000	25,984,330	0	1,075,670	아프간 특별기여자 유아 교육 지원
3	충 청 북 도 국제교육원	2021-09-29	46,700,000	43,740,000	0	2,960,000	아프간 특별기여자 초중등 교육 지원
4	행 정 국 재 무 과	2021-12-28	295,310,000	295,309,700	0	300	교원 급여 소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원
합계			969,070,000	965,034,030	0	4,035,970	

붙임 1. 예비비 사용명세서

[붙임1]

예비비 사용 명세서

(단위: 원)

순	지출건명	과목		사용결정액 ①	지출액 ②	다음연도이월액 ③	집행잔액 ④=①-②+③	사용내역	이월 및 불용 사유
		세부사업	목						
1	소토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공탁금	범무관리	[210]운영비	600,000,000	600,000,000	0	0	소토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으로 인한 청구지방법원의 담보채 공명령에 따른 공탁금	
			소계	600,000,000	600,000,000	0	0		
2	아프간 특별기여자 유아 교육 지원	유아교육지원	[210]운영비	27,060,000	25,984,330	0	1,075,670	아프간 특별기여자 유아놀이, 심 리·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	집행잔액
			소계	27,060,000	25,984,330	0	1,075,670		
3	아프간 특별기여자 초·중등 교육 지원	다문화및북한이탈 주민동자녀교육지원	[210]운영비	46,700,000	43,740,000	0	2,960,000	아프간 특별기여자 초·중등 심리·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어 교육 등 지원	집행잔액
			소계	46,700,000	43,740,000	0	2,960,000		
4	교원 급여 소급에 따른 지연손해금	범무관리	[310]보천금	295,310,000	295,309,700	0	300	국가보안법 무죄판결에 따라 교육 공무원 급여 소급 지급에 따른 지 연손해금 지급	집행잔액
			소계	295,310,000	295,310,000	0	300		
합계				969,070,000	965,034,030	0	4,035,970		

[참고자료] 관계법령

지방재정법 [시행 2022. 1. 13.]

제43조(예비비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
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